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4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이재정・김한규・민병덕

어기구 • 김원이 • 서영석

강준현 • 백혜련 • 권칠승

진성준 • 박희승 • 김태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)이 시행됨에 따라,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이 예견됨.

이러한 재개발·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동이 필연적인 요소로 따라오며, 새로운 주거 공간을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함. 그중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,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고, 이는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.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질을 위한 사업에 기존 거주 세입자를 배척하여서는 안되며,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

이에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,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

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건축·재개발의 주민동의율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).

법률 제 호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
- 2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1조(이주대책의 수립 의무) ①	제31조(이주대책의 수립 의무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국가는 이주민의 주거와 경	4		
제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			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		
<u>건을 갖춘 사람에게</u> 장기저금	해당하는 사람에게		
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			
다.			
<u> <신 설></u>	1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		
	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		
	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	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		
<u><신 설></u>	2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		
	<u>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</u>		
	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	요건을 갖춘 사람	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	